

부산직할시 사하구조례 제 호

##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등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